



보도시점 2026. 4. 28.(화) 12:00 (수요일 조간) 배포 2026. 4. 27.(월)

유럽연합, 강화된 포장규제 적용 눈앞...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 개최

- 포장재 분야 국외 규제 대응 위해 정부기관 합동으로 설명

정부는 4월 29일 국가철도공단 대강당(대전 동구 소재)에서 유럽연합(EU)에서 올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및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에 대한 산업계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포장재 분야 국외(글로벌) 규제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25.2. 발효, '26.8. 시행)

** EU Regulation 2025/351('25.3. 발효, '26.9. 시행)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은 유럽연합 내에서 사용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유해물질 제한, △재활용성 등급 기준 준수, △재생원료 의무사용, △과대포장 금지 등 광범위한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부여하는 규제다.

* 중금속·PFAS 제한('26.8~), 재활용가능비율 70% 이하 출시금지('30~), 플라스틱 음료병 재생원료 30% 의무 사용('30~) 등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은 식품에 접촉하는 플라스틱 용기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재활용 플라스틱의 불순물 오염 방지 등 품질을 관리하며, 이와 관련된 소비자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기존 3개*의 규정을 강화한 규정이다.

* EU 10/2011(플라스틱 식품접촉물 규정), EU 2022/1616(재활용 플라스틱 규정), EU 2023/2006(우수제조관리(GMP) 규정)

포장은 모든 물리적 제품의 생산·유통·소비에 필수적이므로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유럽연합의 포장 규정 시행 전에 우리 산업계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8~9월 시행되는 유럽연합의 포장 규정은 주로 식품이나 화장품 등 생활소비제품에 적용되기 때문에 관련 제품을 유럽국가로 수출하는 업계에서는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그간 부처별로 유럽연합과 양자협의를 통해 규제 내용을 파악하고 각각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대응해 왔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합동 설명회를 준비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주요 내용과 규제준수를 위한 구비서류 등 대응실무 전반을 설명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접촉 플라스틱 포장 안전규정(EU 2025/351) 등 식품·화장품 분야에 특화된 대응전략을 설명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각각 농·식품업계와 중소기업의 맞춤형 대응방안과 부처별 지원사업을 안내한다.

이번 설명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유튜브 라이브 채널에서도 4월 29일 오후 1시 30분부터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상세 설명자료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portal.budamgum.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산업계와의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해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관계부처* 합동 실무작업반(TF)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 기후부(간사), 농식품부, 산업통상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외교부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포장재의 지속가능성과 안전성 기준 강화는 앞으로 우리 산업계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협력하여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함으로써 우리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수출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설명회 추진계획.
 2. PPWR 대응 범부처 TF 운영계획.
 3. PPWR 개요.
 4. PPWR 주요내용.
 5. EU 2025/351 규정 개요. 끝.

담당 부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책임자	과 장	맹학균 (044-201-7380)
		담당자	사무관	양지우 (044-201-7382)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책임자	과 장	강효주 (044-201-2171)
		담당자	사무관	강태원 (044-201-2172)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책임자	과 장	김종락 (044-203-4340)
		담당자	사무관	김 일 (044-203-4341)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책임자	과 장	임창현 (051-773-5480)
		담당자	서기관	김근영 (051-773-5481)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동우 (044-204-7500)
		담당자	사무관	김영철 (044-204-7505)
	식품의약품안전처 첨가물기준과	책임자	과 장	엄미옥 (043-719-2501)
		담당자	연구관	김형일 (043-719-2504)
	한국환경공단 재생원료관리부	책임자	부 장	기경배 (032-590-4180)
		담당자	과 장	김다혜 (032-590-4163)

□ **추진배경 및 경과**

- EU는 역내 유통·소비되는 모든 포장에 대해 포괄적인 지속가능성 기준을 요구하는 법률(PPWR*, Reg 2025/351** 등) 발효, 시행 준비 중

*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26.8월~) **Packaging & Packaging Waste Regulation**

** Regulation (EU) 2025/351('26.9월~) : 식품 접촉 플라스틱 용기포장의 안전 규제

- 그간 부처별로 소관분야 대응 위한 설명회·세미나를 진행하였으나, 산업계 전반에의 광범위한 영향을 고려하여 **유관부처 합동 대응 필요**

□ **설명회 개요**

- (일시·장소) '26. 4. 29. (수) 13:30, **국가철도공단 대강당(대전역 근처)**
* 기후부 유튜브 채널 생중계 병행 ※ 일회용품 사용금지, 음료·다과 섭취 불가
- (주최) 관계부처 합동
(주관) 한국환경공단·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 (주요내용) ①한-EU 실무협의 결과* 및 업계 정보수요**를 반영한 조문별 해설, ②중소기업 지원사업, ③식품분야 대응전략·④지원사업

□ **세부 일정(안)**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3:30~13:35 (5)	개회 및 인사말	기후부
13:35~14:15 (40)	EU PPWR의 이해 및 대응 실무 해설 (FAQ 반영)	환경공단
14:15~14:25 (10)	질의응답	
14:25~14:45 (20)	중소기업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 소개	중기부
14:45~14:55 (10)	질의응답	
14:55~15:05 (10)	휴 식	-
15:05~15:25 (20)	식품 분야 대응전략 ※ 화장품 일부 포함	식약처
15:25~15:35 (10)	질의응답	
15:35~15:45 (10)	식품기업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 소개	농식품부
15:45~15:55 (10)	질의응답	
15:55~16:00 (5)	폐회	

□ **추진배경**

- EU의 포장규제(PPWR)는 품목별·사안별로 각 부처 소관사항이 나뉘어 있어 관계부처 합동 대응 필요
- ☞ 실무급 TF를 운영하여 부처별 역할을 정비하는 등 원팀 대응

□ **TF 구성 및 운영방식**

- (기간) 필요시 상시
- (운영방식) ▲PPWR 내용 및 운영상황 점검, ▲EU 및 업계 동향 공유, ▲업계 설명·지원사업 합동운영, ▲국내제도 운영상 협조요청 등
- (구성) 기후부 자원재활용과장^{TF장}, 각 소관부서 실무자

구분	부처	소관부서	소관사항
관련제도 및 규제 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 (TF장)	자원재활용과	재활용용이성·유해물질 등 포장규제 총괄
	식품의약품안전처	글로벌수출전략담당관 첨가물기준과, 화장품정책과, 첨가물포장과	수출 지원(규제조화), 식품·화장품 용기·포장기준
외교·통상	산업통상부	엔지니어링디자인과 구주통상과	기술개발·컨설팅 지원 對EU 통상정책
	외교부	유럽경제외교과 녹색환경외교과	對EU 순환경제·환경정책
분야별 수출 진흥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농식품 수출촉진 (수산물제외)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수산물 수출촉진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과	중소기업 수출지원
한국환경공단		재생원료관리부	※ EU 규제내용 등 세부사항 자문

구 분	주요 내용		시 행	기 관	하위법령 입법시한	
지속 가능성 요건	유해 물질	중금속 제한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 합산 100mg/kg 이하	'26.8.12.	유럽화학 물질청 (ECHA)	'26.12.31.
		과불화화합물(PFAS) 금지				
	재활 용성	포장재 재활용 등급평가 도입	A(95% ↑), B(80% ↑), C(70% ↑), D(70% ↓) ※ 금지 : D등급('30~) C등급('38~)	'30.1.1.	집행위원회	'28.1.1.
	과대 포장	빈 공간 비율	최대 50% 이하 제한	'30.1.1.	유럽표준화 위원회 (CEN)	'27.2.12.
	재생 원료	의무사용 도입	품질인증 필요	'30.1.1.	집행위원회	'26.12.31.
	바이오	환경영향 등 평가(~'28.12.) 후 정책방향 결정		(미정)	집행위원회	-
	생분해	티백, 과일·채소 라벨, 비닐봉투 의무화		'28.2.12.	유럽표준화 위원회 (CEN)	'26.2.12. (기술표준)
	재사용	수거정보 QR, 재사용가능 라벨 부착		'29.2.12.	집행위원회	'27.2.12.
리필	최소 10% 리필ZONE (면적 400m ² 이상)		'30.1.1.	-	-	
	식음료업종 개인용기 사용체계 마련		'27.2.12.	집행위원회	-	
라벨링 의무화	회원국별 분리배출 표시		'30.1.1.	-	'26.8.12.	
	재사용 가능(Reusable)		'29.2.12.	-	'26.8.12.	
	유해물질 표시		(미정)	-	'30.1.1.	
	EPR 표시		'27.2.12.	-	(미정)	
	보증금 반환(DRS)		'30.1.1.	-	(미정)	
	수거용기 분리배출 표시		'28.8.12.	-	'26.8.12.	
적합성	EU 내 적합성 평가기관 인증 시, 적합판정			유럽인증협력 (EA)		

※ '26.9.16 시행 예정, EU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 소관

□ 규정 신설 배경

- 플라스틱 식품용 기구·용기·포장 제조시 사용하는 원료(첨가제 등) 등 제품에 혼입되는 물질을 모두 포함한 통합적인 관리 필요
- 발생 가능성 있는 위해를 모두 예측하여 종합 안전관리 필요하며, 노출 평가 시 실제 사용조건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주요 내용

- 모든 플라스틱 식품용 용기포장의 품질관리 기준 강화
 - 플라스틱에 존재 가능한 모든 물질(비의도적 첨가물까지 포함)에 고순도 (high purity)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조성 및 안전성 근거의 문서화 의무
 - 기구·용기·포장 원료 제조업체와 원료 사용자(중간단계 제조업체)는 비의도적 첨가물질(NIAS)에 대해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적합선언서를 작성하여 유통업체와 공유하는 등 세부요건 강화

* NIAS: Non-Intentionally Added Substances

※ 단, 비의도적 첨가물질이 허용물질 목록(Union List)에 명시된 규격 또는 제한사항을 준수할 경우 제외
- 재활용, 재가공 관리 기준 강화
 - 재활용을 위한 탈오염 공정 기준 강화,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투리 재가공 기준 신설
- 반복 사용 제품에 대한 표시 등 소비자 안내 의무 신설
 - 뜨거운 온도에서 반복 사용시 열화 식별·지연방법, 오용 경고 제공 의무
-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플라스틱 표면층에 대한 위해노출 평가시 실제 사용조건을 반영하도록 적용 및 검증 규칙의 정합성 재고